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| 규정번호 | 3-8-18 |
| | | 제정일자 | 2010.12.13. |
| | | 개정일자 | 2020.09.01. |
| | | 개정차수 | 6차 |
| | | 소관부서 | 전략기획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령 고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대학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·의결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동의하는 학내·외 제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각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수가 위원회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⑤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격) ① 교직원위원은 전략기획처장, 학생성공처장, 행정지원처장과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.

②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과 대의원장, 총학생회장의 추천하는 학생 1인 이상으로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개시 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대상 학년도 재학예정자로 위촉 할 수 있다.

③ 관련전문가 위원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.

④ 제1항, 제2항, 제3항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교직원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 또는 교직원 보직 임면에 의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7조(회의개최 공지) 위원장은 회의안건, 회의일시와 장소를 회의 개최일 기준 5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의결이 필요 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자료요청권)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3조 내지 제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